

「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이창열 의원이 발의하고, 2023년 6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이 시행 예정¹⁾이므로, 평창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 정책의 방향에 발맞추고 평창군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 규정(안 제3조 ~ 제4조)

다. 지원사업, 교육 및 홍보사항, 민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(안 제5조 ~ 제7조)

라. 비밀준수의 의무 규정(안 제8조)

1)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약칭: 스토킹방지법), 2023. 7. 18. 시행

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평창군 내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지원하여
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,
이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으며,
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·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
규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,

스토킹 범죄는 사전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,
주거침입, 협박, 상해, 살인 등 후속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,
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
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
본 조례안의 취지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되며,
제정에 따른 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※ 관련 입법례: 전국 73개 지자체, 도 내 4개 시·군

(삼척, 양양, 정선, 태백)